

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

[시행 2023. 1. 1.] [기획재정부령 제948호, 2022. 12. 30., 일부개정]

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」에 따르면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시장 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,

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과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팥·녹두 등 건조한 채두류(菜豆類)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4,694톤에서 23,194톤으로 늘리는 등 13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.

<기획재정부 제공>

개정문

○ 기획재정부령 제948호

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2년 12월 30일
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(인)

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
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시한)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.